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입시공정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 2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2. 10. 23., 2020.08.12.)
 - 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한다.(개정 2020.08.12.)
 - ③ 위원은 교직원, 외부위원,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.(개정 2019. 8. 29., 2020. 9. 8.)
 -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의 직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.
- 제 3조 (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활동기간은 당해 연도 원서접수기간 2개월 이전부터 합격자 발표이후 2개월로 한다.(개정 2020.08.12.)
 - ② 위원 중 호서대학교 「입학전형 교직원의 회피 및 배제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규정된 회피·배제 대상자는 즉시 해촉하며 외부위원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.(개정 2020.08.12.)
- **제 4조 (임무)** 위원회는 본 대학교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20. 3. 1.)
 - 1.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
 - 2. 입시관리 업무의 감시
 - 3. 입시 자체감사
 - 4. 입시 결과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 5조 (소집과 의결) ①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(개정 2016. 2. 23)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16. 2. 23)
 -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 6조 (회의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임무수행 내용을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 7조 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2월 23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8. 29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8.12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9. 8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